제99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열요금 조정 비율(강화) ㅇ 현행 제도는 총괄원가가 기준사업자보다 낮은 경우 또는 원가자료 미제출시 기준사업자(한난) 요금의 100%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나, 제도 개편을 통해 '25년-98% / '26년-97% / '27년-95%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편 ▶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, 제12조	1.중요
2	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1.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능 설치 의무(신설) ㅇ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에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능을 추가 ▶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 2.자동식별장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율해상무선기기의 조건 (신설) ㅇ 자동식별장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율해상무선기기의 조건을 규정 ▶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6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설치 · 운영 기준(신설)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항에서 위임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설치 ·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– 설치기준, 직원의 배치 기준, 운영 기준 등 ▶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5]	1.비중요
4	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회원의 의결권 ·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자액 한도(신설) ㅇ 의결권 · 선거권 행사를 위한 출자액 최고한도 마련 – 2025년 7월 8일부터 가입하는 회원 중 출자액이 20만원 미만인 회원에 대해 의결권 ·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 ▶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조 2.부실우려금고 및 부실금고의 지정(신설) ㅇ 금고의 부실정도*에 따라 관리위원회 심의 거쳐 부실 · 우려금고 지정 여부 결정 및 통지 – 부실우려금고 · 지정권자 : 중앙회장 (← 장관 위임) · 지정기준 : 순자본비율 4% 미만,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이하,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으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 등(= 현행 경영개선권고 · 요구 요건)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부실금고 : 순자본비율 –7% 이하, · 지정권자 : 장관 (← 중앙회장 요청) · 지정기준 : 순자본비율 –7% 미만, 부채가 자산 초과 등(= 현행 경영개선명령 요건) ▶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2조, 제23조 3.경영개선명령 의무화 및 이행계획 제출기한 단축(강화) ㅇ 부실금고로 지정되면 회장은 장관에게 해당금고에 필요한 조치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,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금고에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함 ㅇ 경영개선이행계획 제출기한 :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▶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9조,제28조	
5	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교육부)	1.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류 및 행정절차 규정(신설) ㅇ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(변경 운영계획서, 정관 등)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필요 ㅇ 교육부장관은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통지기간을 연장 가능 ▶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	1.비중요